(재)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8 - 28호

## = [재]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=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

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·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(재)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.

2018년 8월 21일

#### [재]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

#### □ 선발분야

#### ① 성적우수 장학생

○ 선발인원 : 고등학생 100명, 대학생 25명 \*학교별 선발인원 배정

○ 지 급 액 : 고등학생 700천원, 대학생 최대 2,000천원

○ 선발방법 : 학교장 추천

#### ② 모범 장학생

○ 선발인원 : 중학생 31명, 고등학생 39명, 대학생 63명 \* 예산 범위 내 추가 선발 예정

○ 지 급 액 : 중학생 300천원, 고등학생 700천원, 대학생 최대 2,000천원

○ 선발방법 : 읍·면·동 또는 재단으로 직접 신청 및 기타 방법

#### ③ 특기적성 장학생

○ 선발인원 : 예산범위 내(초·중·고)

○ 지 급 액 : 1위 700천원, 2위 500천원, 3위 300천원

○ 선발방법 : 학교장 추천

#### ④ 희망 장학생

○ 선발인원 : 5명(중·고·대 수시 접수)

○ 지 급 액 : 2,000천원

○ 선발방법 : 장학생 상황(가정형편 등)이 긴급한 경우 이사회 심의없이 이사

장이 선발

#### ⑤ 지역혁신인재 장학생

○ 선발인원 : 예산 범위 내(대학생 및 일반 시민 수시 접수)

○ 지 급 액 : 2,000천원

○ 선발방법 : 사회일반 및 문화·예술·체육 등 분야에서 세종의 발전에 기여

한 자 선발

#### ⑥ 순직·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장학생

○ 선발인원 : 예산 범위 내(중·고·대 수시 접수)

○ 지 급 액 : 중학생 600천원, 고등학생 1,200천원, 대학생 2,000천원

○ 선발방법 : 해당 기관장 및 학교장 추천(공무원), 가족이 직접 신청(의사자)

#### □ 신청방법

① **신청기간 및 추천자** ('18. 9. 20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함)

○ 성적우수장학생 : '18. 9. 20(목)까지 / 해당 학교장

○ 모 범 장 학 생 : '18. 9. 20(목)까지 / 읍·면·동장 확인

○ 특기적성장학생 : '18. 9. 20(목)까지 / 해당 학교장

#### ② 신청서류

○ 공통서류 (\* 신청자 모두 제출)

① (별지 제1호서식) 장학금 지원 신청서(지역혁신인재, 순직·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별도) ② (별지 제2호서식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(별지 제3호서식) 他 장학금 수혜(비수혜) 확인서(지역혁신인재, 순직·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제외) ④ (별지 제4호서식)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(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대학생은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 ⑥ 통장사본(부모의 경우 등본상 확인 가능하여야 함)

○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(※서류 미비시 미접수 처리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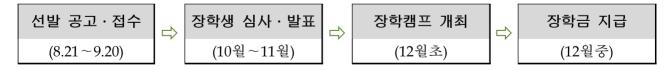
 분 야	대 상	신 청 서 류						
	고 등 학 생	▶ (별지 제5호서식) 학(교)장 추천서 ▶ 성적증명서류(학교에서 일괄 제출)						
성적우수	대 학 생	<ul> <li>▶ (별지 제5호서식) 학(교)장 추천서</li> <li>▶ 성적증명서</li> <li>▶ 재학증명서(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유효)</li> <li>▶ 등록금 납입 영수증(학교 발급)</li> </ul>						
	중·고등학생	<ul> <li>▶ (별지 제6호서식) 가사상황 조사서 ※ 주민센터 방문 필수</li> <li>-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사상황 조사서 대신 "수급자 증명서" 제출</li> <li>▶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공고일 기준 3개월분('18.5~7月)</li> </ul>						
모 범 	대 학 생	<ul> <li>▶ (별지 제6호서식) 가사상황 조사서 ※ 주민센터 방문 필수</li> <li>-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사상황 조사서 대신 "수급자 증명서" 제출</li> <li>▶ 재학증명서(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유효)</li> </ul>						

		▶ 등록금 납입 영수증
		▶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3개월분(공고일 기준)
	참 고 사 항	▶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관련 (미혼자) 부, 모의 건강보험료 제출 (기혼자) 본인,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제출 (맞벌이 가구) 부와 모 모두 제출
특기적성	초·중·고	▶ (별지 제7호서식) 학교장 추천서 ▶ 수상증명서(상장) 사본 (※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실적)
희 망	중·고·대학생	▶ 모범장학생과 동일 ▶ 기타 증빙자료
지역혁신 지역혁신 인 재	대학생 및 일반시민	<ul> <li>▶ (별도 붙임 서식)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신청서</li> <li>▶ (별도 붙임 서식) 미래계획서</li> <li>▶ (별도 붙임 서식)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</li> <li>▶ (별도 붙임 서식) 활동포트폴리오</li> <li>▶ (별도 붙임 서식) 장학금사용계획서(훈련비, 활동비 등 자기개발지원금)</li> <li>▶ 기타 증빙자료</li> </ul>
순직·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자녀	중·고·대학생	<ul> <li>▶ (별지 제8호서식) 순직·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</li> <li>▶ 가족관계등록부 등 순직·공상·의사자와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▶ (별지 제9호서식) 학교(기관)장 추천서</li> <li>▶ 기타 순직·공상(공무원연금공단 및 국가보훈처 발급) 및의사자 확인 가능한 서류</li> <li>ex) 순직보상급여지급사실확인서, 공상결정서,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, 의사자 증서 혹은 의사자 유족증(의사자)</li> </ul>

○ 제출처 : 세종시 대평1길 10 (대평동,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 4층) (재)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담당자 앞 (우)30153

③선발결과 발표 :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(http://www.sejong.go.kr/injae.do)

#### □ 선발일정



### □ 기타사항

-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일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정지(장학사업 관리 규정)
- 타 기관(학교)과 장학금 중복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
- 문의처 : 진흥원 사무국 담당자 ☎ 044-866-8551, 044-865-9670

# = 인재육성의 요람,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=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

◆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・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을「장학사업 관리 규정」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함

## Ⅰ 선발 개요

#### □ 선발근거

- 「2018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」(2017.12.20) : 이사회 의결사항
-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진흥원「장학사업 관리 규정」제5조(공고) 및 제2장(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)

#### □ 선발원칙 : 짱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한 선정(규정 제8조)

-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목적 부합
- 장학사업별 사업계획에 근거한 선정대상의 적합성 중시
- 투명한 선정을 위해 전문성 및 절차적 공정성 준수
- 선정대상이 처한 경제적, 사회적, 심리적 상황 존중

#### □ 선발분야

- 금회 선발(본 공고) : 성적우수 장학생외 5개 분야
- 해외탐방 장학생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: 기 공고

## Ⅱ 세부 선발계획

## │ 성적우수 장학생

#### 가. 고등학생

O 선발인원 : 100명

학교명	인원	학교명	인원	학교명	인원
~~~~~ 총인원	100	도담고	7	양지고	8
세종고	9	아름고	8	보람고	5
세종여고	8	고운고	6	새롬고	6
한솔고	7	두루고	7	소담고	2
세종하이텍고	5	세종과학예술영재고	3	세종예고	1
세종국제고	4	종촌고	8	성남고	6

O 지 급 액: 700천원

O 선발기준 :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

※ 직전학기 성적이 3%이내로 석차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 학교에서 일괄 제출

O 추천권자 : 학교장

O 선발 제외 대상

-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(연도별 구분)

#### 나. 대학생

O 선발인원 : 25명

총인원	고려대	홍익대	대전카톨릭대	한국영상대
25	10	9	1	5

※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 예정

- O 지 급 액 : 최대\* 2,000천원 (∗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)
- O 선발기준 (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)
  -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  - 부·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(공고일 기준)
  -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3.5점(4.5점 만점 기준) 이상인 자
- 추천권자 : 총·학장
- O 선발 제외 대상
  -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(연도별 구분)
  -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
  -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

## ll 모범 장학생

○ **선발인원** :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 예정

학교명	인원	학교명	인원	학교명	인원
총인원	30	부강중	1	종촌중	2
조치원	1	한솔중	1	양지중	2
조치원여중	1	도담중	2	소담중	1
연동중	1	새롬중	2	새움중	1
연서중	1	아름중	2	새뜸중	1
금호중	1	어진중	1	보람중	1
전의중	1	고운중	2	글벗중	1
장기중	1	두루중	2	다정중	1
학교명	인원	학교명	인원	학교명	인원
~~~~~ 총인원	28	도담고	2	양지고	2
세종고	2	아름고	2	보람고	2
세종여고	2	고운고	1	새롬고	1
한솔고	2	두루고	2	소담고	1
세종하이텍고	1	세종과학예술영재고	1	세종예고	2
세종국제고	1	종촌고	2	성남고	2

총인원	고려대	홍익대	대전카톨릭대	한국영상대
25	10	9	1	5

- 지 급 액 : 중학생 300천원, 고등학생 700천원, 대학생 최대\* 2,000천원 (\*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)
- O 선발기준 (※저소득 가정의 자녀 우선 지원)
  - 부·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(공고일 기준) 거주(대학생만)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\* 이하 가정의 자녀

#### 【 \* 2018년 기준 중위소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9호) 】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(원)	1,672,105	2,847,097	3,683,150	4,519,202	5,355,254	6,191,307	7,027,359

- 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: 1인 증가시마다 836,052원씩 증가 (8인가구: 7,863,411원)
- O 선발 제외 대상
  -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
  - 타 장학금 전액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(대학생만 해당)
  - 휴학생, 휴학 예정자,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
  -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[경찰대, 육사, 해사, 공사, 한국과학기술원(카이스트), 포스텍 등]
- O 접수방법 : 읍·면·동 또는 재단에 직접 신청 및 기타 기관\*(참고 1)
  - \* (별지 제1호 및 제6호서식)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기관(붙임 1) 확인 (직인) 가능(그 외 학교 장학담당자 확인 및 학교장 직인 필수)
- 심사방법 : 건강보험료 배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(붙임 2)

#### 【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(가사상황 조사서 참고) 】

- (1순위) 총 과세표준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
- (2순위) 주거환경(기타→월세→전세→자가) 순으로 선발
- (3순위) 월 소득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

## Ⅲ 특기적성 장학생

- O 선발인원 : 예산범위 내
- O 지급액: 1위 700천원, 2위 500천원, 3위 300천원
  - ※ 주최(주관)기관에서 받은 시상금은 시상 여부와 상관없이 장학금 전액 지급
- 선발기준 (※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)
  - 관내 초·중·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
  -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문사회, 과학, 예체능 등 분야로 공공기 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·주관한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 순서 기준, 3위 이상\* 수상자로 학교장·총(학)장이 추천한 사람
  - ※ 시상내역이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일 경우 대상이 1위
- O 추천 제외 대상

- 단체(팀) 수상
- 비공인 단체가 주최한 대회 입상자
- 국민의식 함양 및 계몽성 대회 입상자
- 시·군·구 단위 기관 및 관련 단체 지부 등에서 주최한 대회 입상자
- 회사 홍보를 위한 대회 입상자
- 각종 사례 발표대회 입상자
- 대학(원)의 총(학)장이 주최한 각종대회 입상자
- 체육회, 교육청 등에서 격려금이나 후원금을 각 지급액 초과하여 받은 자 ex) 1위 해당자로 격려금이나 후원금을 100천원 받았을 경우 차액 600천원 지급
- ※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은 1인 1회만 지급
- ※ 예산범위 초과 신청할 경우, 상위대회 입상자 및 동률일 경우 입상 횟수로 우선 선발-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선발은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
- 추천권자 : 학교(총)장

## IV 희망 장학생

- O 사업개요 : 천재지변, 상해, 가정형편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
- 선발인원 및 지급액: 5명(수시) / 1인당 2,000천원
- O 선발기준
  - 본인 또는 부·모 기타 보호자가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(사유발생일 기준)
  - 관내 중·고·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  - 장학생 상황(가정형편)이 긴급한 경우
- O 선발절차

## V 지역혁신인재 장학생

O 사업개요 : 장학금의 개념을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확대하여 인재

#### 육성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발전 도모

- O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: 예산범위 내(1인당 2,000천원)
- O 선발대상 : 일반시민 및 대학생
- O 선발기준
  - 주소지 제한 없음
  - 사회일반 및 문화·예술·체육 등의 분야에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
- O 선발제외 : 초·중·고등학생
- 지원서류 : 자기소개서, 장학금사용 계획서, 기타 증빙자료
- 지원내역 : 자기개발 지원금(훈련비, 활동비 등)

## l 순직·공상 공무원 자녀 및 의사자 자녀 장학생

- 선발인원 및 선발대상 : 20백만원 예산범위 내(수시) / 중·고·대학생
- O 지급금액: 중학생 600천원, 고등학생 1,200천원, 대학생 2,000천원
- O 선발기준
  - 순직·공상 공무원 : 본인(공상) 또는 자녀(순직·공상)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- ※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높을수록 우선 선발(위원회에서 결정)
  - 의사자 :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사자의 자녀
- O 추천권자: 해당 기관·학교장(공무원) 추천 혹은 가족(의사자)이 신청
- O 선발제외
  -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
  -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퇴학,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중 그 처분사유 등이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공상 공무원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(붙임 3 참고)
- O 선발절차

## Ⅱ 향후 일정

#### □ 선발 일정

○ 주요일정



-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: '18. 10. 30
- 해외탐방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 : '18. 10. 12(서류) / 10. 26(면접)
-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: 인재육성국-353('18. 8. 7)호로 추진

#### □ 홍보 방법

- ○「하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」홍보 포스터 제작·부착 ※ 관내 초중고 및 충청권 22개 대학교에 협조 공문 및 포스터 발송
- 보도자료 배포 및 시청·진흥원 홍보자료 홈페이지 게시
- 관내 학교, 도서관, 읍·면·동 민원실에 포스터 부착 등
- 주요 도로변 및 버스정보시스템(BIS)전광판 홍보문구 송출

### 붙임 1

## 모범장학생 선발 관련 추천 가능 기관

□ 모범장학생(학교 밖 청소년)은 아래의 기관에서 추천 가능한 장학생에 한함

	구 분 (홈페이지)	시설수	소재지		시	주요사업	소재지(전화번호)
	(홈페이지)	<sup>空</sup> 수	읍	면	동	<b>一一工</b> 作品	조세시(신화민모)
	합 계						
1	읍면동 지역사회 보 장 협 의 체	-				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금 특화사업	각 읍면동 담당자
2	건강가정·다문 화 지 원 센 터 (www.liveinkorea.kr)	1			1	다문화가족 지원, 가 족 돌 봄 사 업	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(862-9336)
3	장 애 인 복 지 관 (www.sjwelfare.com)	1			1	장애인 재활, 문화여 가 , 직 업 복 지	조치원읍 평안로 11 (865-3325)
4	세 종 시 장 애 인 가 족 지 원 센 터 (www.sjfamily.or.kr)	1			1	장애인 가족 복지서 비스, 후원, 자원봉 사	조치원읍 새내10길 61 4층 (866-8011~2)
5	청 소 년 활 동 진 흥 센 터 (www.sjyputh.or.kr)	1			1	청소년활동정책 지 원 기 관	마음로(고운동) 284 (864-7935)
6	청 소 년 상 담 복 지 센 터 (sj1388.or.kr)	1	1			청소년 상담 및 복 지 지 원	조치원읍 조치원 2길 5 (867-2000)
7	세종시 청소년 수 련 관 (www.sj1318.net)	1	1			청 소 년 활 동 프로그램 운영	조치원읍 수원지길 75-21 (864-1318)
8	세종시 청소년 문 화 의 집 (town.cyworld.co m/youthhouse)	1	1			청 소 년 활 동 프로그램 운영	세종문화예술회관 2층 (865-7939)
9	학교밖 청소년 지 원 센 터 (sj1318.or.kr)	1	1			학 교 밖 청 소 년 대 상 통 합 지 원	조치원읍 조치원 2길 5 태원빌딩 6층 (868-1318)
10	지 역 아 동 센 터	12	5	6	1	보육,교육, 문화, 정 서지원, 지역사회연 계 등 복지서비스	조치원읍 산막5길 3-4 외 11 (070-4028-9995)
11	청소년 방과후 아 카 데 미 (www.sjkyd.org)	3	2		1	전문체험 및 학습프 로그램, 청소년 생활 관리 등 종합서비스	아름동복컴 3층(아름) 조치원읍 산책1길 65(가온)
12	교육청 Wee센터 (www.sje.go.kr)	1			1	선도·치유가 어려 운 위기 학생들에 진단-상담-치료	한누리대로 2154 1층 (320-2470)
13	교육청 아람센터	1			1	학교폭력피해 전담센터	종촌종합복지센터 2층
14	가정형 Wee 센터	1	1				조치원읍 조치원9길 26 (715-7939)
15	세종 YWCA 성인 권 상 담 센 터	1				성인권 교육,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	조치원읍 군청로 87-16 2층 (862-9191)

## 붙임 2 건강보험료 배점표

#### □ 보험료 합산 및 가구원수

- (미혼자) 부·모의 건강보험료
  - 가구원 : 신청인의 '주민등록등본'상에 등록된 가구원 중 본인, 부·모, 형제자매
- O (기혼자) 본인, 배우자의 건강보험료
  - 가구원 : 신청인의 '주민등록등본'상에 등록된 가구원 중 본인, 배우자, 자녀
- O (맞벌이 가구) 부·모 중 낮은 건강보험료 1/2 감경 후 합산(높은 보 험료+낮은 보험료×0.5)
  - ※ 조부모, 친인척, 동거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

#### □ 보험료 산출방법

- O (월 평균 건강보험료)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÷ 납부개월수(3)
- O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※ 장기요양보험료, 연말정산 제외
- O 부·모(본인 및 배우자)가 모두 지역세대원(피부양자)일 경우 건강보 험료 미반영

#### □ 건강보험료 배점

- 부·모가 모두 지역세대원(피부양자) 가정 : 100점
- O 보험료를 합산하여 아래 표의 가입 자격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에 따라 배점

## [ 배점기준표] : (출처) 보건복지부(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)

중위	미저			직장	가입자	건강보	험료 본	인부담	금(원)		
중위 소득	배점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
50%	100	27,572	44,445	58,049	71,374	84,229	97,687	110,096	122,690	137,557	149,745
60%	95	31,599	53,474	69,711	84,887	100,955	116,936	131,976	147,490	163,172	179,545
70%	90	37,114	62,400	80,933	98,878	118,354	135,662	154,179	173,764	191,711	210,278
80%	85	42,099	71,374	92,410	112,792	133,811	156,121	176,657	198,786	218,525	242,183
90%	80	47,326	80,039	104,385	127,023	152,061	176,657	198,786	223,032	249,924	268,167
100%	75	52,565	89,641	115,568	141,300	168,404	195,224	223,032	249,924	279,134	306,683
110%	70	57,458	98,878	127,023	156,121	185,543	214,407	242,183	279,134	306,683	352,610
120%	65	63,395	106,682	139,572	171,063	202,519	234,986	268,167	306,683	352,610	382,121
130%	60	68,117	115,568	149,745	185,543	218,525	258,360	291,638	324,976	382,121	410,811
140%	55	73,222	125,376	163,172	198,786	234,986	279,134	324,976	352,610	382,121	454,412
150%	50	79,122	133,811	173,764	214,407	258,360	291,638	352,610	382,121	410,811	454,412
160%	45	85,531	143,379	185,543	228,701	268,167	324,976	352,610	410,811	454,412	527,607
170%	40	89,641	152,061	198,786	242,183	291,638	352,610	382,121	454,412	527,607	527,607
180%	35	94,319	160,668	210,278	258,360	306,683	352,610	410,811	454,412	527,607	677,803

중위 배저				지역	가입자	건강보	험료 본	인부담	금(원)		
소득	배점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
50%	100	4,704	17,355	34,209	59,490	84,091	103,841	122,508	139,394	156,996	170,039
60%	95	7,946	27,773	56,874	85,412	108,657	131,825	150,960	167,711	184,310	200,975
70%	90	9,724	41,665	78,950	105,526	133,671	155,065	174,656	195,109	213,918	233,598
80%	85	12,761	59,490	95,295	126,195	153,025	176,921	197,937	221,190	243,150	266,785
90%	80	20,824	77,515	113,727	145,105	172,217	197,937	221,190	248,389	274,069	291,169
100%	75	26,650	92,445	129,883	161,163	189,593	217,535	248,389	274,069	301,351	326,539
110%	70	33,626	105,526	145,105	176,921	207,227	238,237	266,785	301,351	326,539	363,427
120%	65	45,733	117,211	159,232	192,273	225,054	260,122	291,169	326,539	363,427	382,610
130%	60	53,139	129,883	170,039	207,227	243,150	282,164	312,942	342,920	382,610	399,121
140%	55	63,659	143,229	184,310	221,190	260,122	301,351	342,920	363,427	382,610	420,433
150%	50	76,097	153,025	195,109	238,237	282,164	312,942	363,427	382,610	399,121	420,433
160%	45	82,664	163,438	207,227	254,055	291,169	342,920	363,427	399,121	420,433	449,890
170%	40	92,445	172,217	221,190	266,785	312,942	363,427	382,610	420,433	449,890	449,890
180%	35	99,203	181,802	233,598	282,164	326,539	363,427	399,121	420,433	449,890	499,393

중위	베저			혼합	가입자	건강보	험료 본	인부담	금(원)		
중위 소득	배점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
50%	100	28,497	45,137	58,731	71,788	84,887	98,878	111,500	124,326	139,572	152,061
60%	95	33,048	54,093	70,459	85,881	102,190	118,354	133,811	149,745	165,762	182,496
70%	90	37,440	62,400	81,568	99,898	119,794	137,557	156,121	176,657	195,224	214,407
80%	85	42,168	71,788	93,448	114,241	135,662	158,193	179,545	202,519	223,032	249,924
90%	80	48,017	80,933	105,664	128,669	154,179	179,545	202,519	228,701	258,360	279,134
100%	75	53,034	90,485	116,936	143,379	171,063	198,786	228,701	258,360	291,638	324,976
110%	70	58,049	99,898	128,669	158,193	188,442	218,525	249,924	291,638	324,976	382,121
120%	65	64,142	108,042	141,300	173,764	206,355	242,183	279,134	324,976	382,121	410,811
130%	60	68,640	116,936	152,061	188,442	223,032	268,167	306,683	352,610	410,811	454,412
140%	55	74,142	127,023	165,762	202,519	242,183	291,638	352,610	382,121	410,811	527,607
150%	50	80,039	135,662	176,657	218,525	268,167	306,683	382,121	410,811	454,412	527,607
160%	45	84,229	145,467	188,442	234,986	279,134	352,610	382,121	454,412	527,607	677,803
170%	40	90,485	154,179	202,519	249,924	306,683	382,121	410,811	527,607	677,803	677,803
180%	35	95,486	163,172	214,407	268,167	324,976	382,121	454,412	527,607	677,803	3,169,355

<sup>※</sup>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임

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M79조 M1항

- 1. 「국가보안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2. 「형법」제87조부터 제90조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사람
- 가.「형법」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64조의 죄,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7조, 제288조(결혼을 목적으로 제 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). 제289조(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290조, 제291조, 제292조(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 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,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,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제294조(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,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 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,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 외한다)의 죄,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의 죄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 또는 그 미수죄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· 제338조 전단 · 제339조의 미수죄,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51조(제 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50조,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63조의 죄
- 나.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, 제3조 제3항 및 제6조(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- 다. 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
- 라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죄
- 마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- 바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7조, 제8조,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
- 사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
- 4. 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 및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,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5.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